##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4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권향엽・박지원・정동영

정일영 · 허성무 · 김기표

이병진 · 문진석 · 이재관

전종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 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3회 연속하여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소속·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본
	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3회 연속하여 제3항에 따
	른 권고를 하는 경우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위원회의 소속ㆍ명단을 공
	<u>개하여야 한다.</u>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